

#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 :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 
(관세청 고시 제2022-55호, '22. 11. 17.)

## 2. 개정 사유

-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,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적용을 위한 B/L분할 제한,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
- 타 고시·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,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(제15조)
  - 수입심사 실익이 적은 장애인용품 감면 건\*, AEO 업체의 수리전반출 제도 활용 시 부분품 분할수입신고 건에 대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

\* 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
-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/L분할 제한 (제16조)
  -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,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
-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 (제38조)
  - 「자유무역협정(FTA) 관세법」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 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

□ 타 고시·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

(제34조, 제37조)

- 「공무원복무규정」 ⇒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
- 「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(기재부 훈령)」 폐지 반영 ('05.8.18.)

□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

(제14조, 제7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32조, 제33조, 제36조, 제43조, 제95조, 제96조, 제97조, 제119조, 제123조, 제124조, 제136조, 제141조, 제143조)

- 기타 ⇒ 그 밖의, 우송한 ⇒ 우편으로 보낸 등 용어 변경

□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(별지 제5호, 제8호)

-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

**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**

**5. 규제대상여부 : “해당없음”**

**6. 시행일자 : 2023. 05. 03.**

**7. 의견제출 방법**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담당자 : 김희진 사무관(042-481-7851)  
이현성 관세행정관(042-481-7733)
- 제출기한 : 2023. 04. 23.
- 제출방법 : 이메일(lhs1201@korea.kr), 팩스(042-481-7819)